

의안번호	2200542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4. 7. 4.
추계번호	24F092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일몰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주민세는 2025년 45.5억원, 2027년 62.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61.2원(연평균 53.7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주민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(안 제10조제2항)	-45.5	-53.3	-62.4	-161.2	-53.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2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 분 및 종업원분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간 연장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제2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향후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의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주민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(17%)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농어업인이 영농, 영림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
 - 사업소분: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적용하여 산출
 - 기본세율: 사업주 개인 5만원(표준세율), 법인 자본금에 따라 5~20만원
 -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㎡당 250원(표준세율)
 - 종업원분: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액의 총액의 0.3%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산 세율(표준세율)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최근 5년간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

감면액은 2018년 15.1억원에서 2022년 28.4억원으로 증가추세(연평균 증가율 17.0%)에 있음

[표 2]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 증가율
농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액	15.1	16.2	19.5	23.5	28.4	17.0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주민세는 2025년 45.5억원, 2027년 62.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61.2억원(연평균 53.7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(17%)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농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주민세 감면액	45.5	53.3	62.4	161.2	53.7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